감 정 평 가 서

Appraisal Report

감정평가서번호	D42108-F-2501
건 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0-5 내제지하층 제101호 외 2개호
의 뢰 인	우리자산신탁㈜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 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
Pacific Appraisal Co., Ltd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31-10 602호(장항동,파크프라자)
대표전화 : (031)932-0072 FAX : (031)932-0073

인증서번호 : P210901-D002

심의일자 : 2021-09-01

가 격 심 의 인 증 서

감정서 번호	D42108-F-2501	발 의 처	본사
감정평가액	一金팔십일억삼천만원整 (\8,130,000,000.-)		
물건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0-5 내 제 지하층 101호외		
물 건 종 별	구분건물	평 가 목 적	공 매
거 래 처	우리자산신탁	제 출 처	우리자산신탁
담당평가사	안승오		

※ 심사사항

1. 감정평가 가격의 적정성
2. 감정평가 대상물건의 기본적사항의 확정
3. 평가방법의 적정성
4. 관련법규 및 제규정의 준수여부
5. 기타 유의사항의 참작여부

심사의견

적정

본 감정평가서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심사운영규정의 심사절차 및 방법에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기에 가격심의 인증서를 발행합니다.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32 (신당동, 남산타운5번상가 3,4층) TEL : 02)514-8811 FAX : 02)514-8812

(구 분 건 물) 감 정 평 가 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안 승 오)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
지 사 장

홍 성 철 (인)

(서명 또는 인)

감정평가액	팔십일억삼천만원정 (₩8,130,000,000.-)			
의 뢰 인	우리자산신탁㈜	감정평가목적	공 매 (인증서번호: P210901-D002)	
채 무 자	-	제 출 처	우리자산신탁㈜	
소 유 자 (대상업체명)	수탁자:우리자산신탁㈜	기 준 가 치	시장가치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근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 준 시 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2021. 8.27.	2021. 8.27.	2021. 9. 1.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구분건물	3개호	구분건물	3개호	-	8,130,000,000
		이 하 여 백			
					₩8,130,000,000.-

심 사 확 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 사 자: 감 정 평 가 사 (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개나리아파트교차로”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제지하층 제101호 외 2개호에 대한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입니다.

2. 감정평가 기준 및 근거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감정평가관계법규와 감정평가 이론에 근거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3.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 조건

3.1.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시장가치”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합니다.

3.2. 감정평가 조건에 대한 검토

감정평가 조건은 없습니다.

4.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4.1. 감정평가 관련 규정의 검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7조(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1조(감정평가방식)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업자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 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4.2. 대상물건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대상물건은 구분소유 부동산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16조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수익환원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하나, 대상 물건의 지층 및 3층 상가는 기준시점일 현재 다소 침체되어 있는 상가로서, 본건에 대한 임대수준의 형성이 되어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본 평가 시 생략하였습니다.

4.3. 일괄·구분·부분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

대상물건은 구분소유 부동산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및 제16조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5. 기준시점의 결정 및 그 이유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기준시점은「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9조 제2항에 의하여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1년 8월 27일입니다.

6.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본건은 2021년 08월 27일자로 동일성 여부, 권리상태, 물적사항, 가치형성요인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7. 그 밖의 사항

1) 본건은 공부와 현황간 물적동일성은 대체로 일치합니다.

2) 본건의 위치 확인은 현관에 명인 된 호수 및 현장조사 시 탐문된 사항(임차인의 점유부분) 등에 의거하여 확인하였습니다.

3) 본건에 대한 토지지분은 일련번호(가)~(다) 일괄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구분소유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대지사용권(토지지분)이 일체성을 가지고 일체로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향후 적정 소유권대지권이 이전될 것을 전제로 하여 감정평가 하였는 바,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4) 구분소유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 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토지·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의뢰인측 요청에 따라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실제 본건의 원가수준 및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고, 한국부동산연구원 감정평가연구자료 중 비주거용 집합건물의 토지·건물배분비율을 참고하여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배분(토지비율95%, 건물비율5%)하여 감정평가액 결정 및 결정의견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대상물건 개요

1. 개요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0-5**		
건물명	성림상가**(**통칭**)**		
용 도	근린생활시설	**사용승인일자**	**1977-12-03**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층 수**	지하 **1**층 / 지상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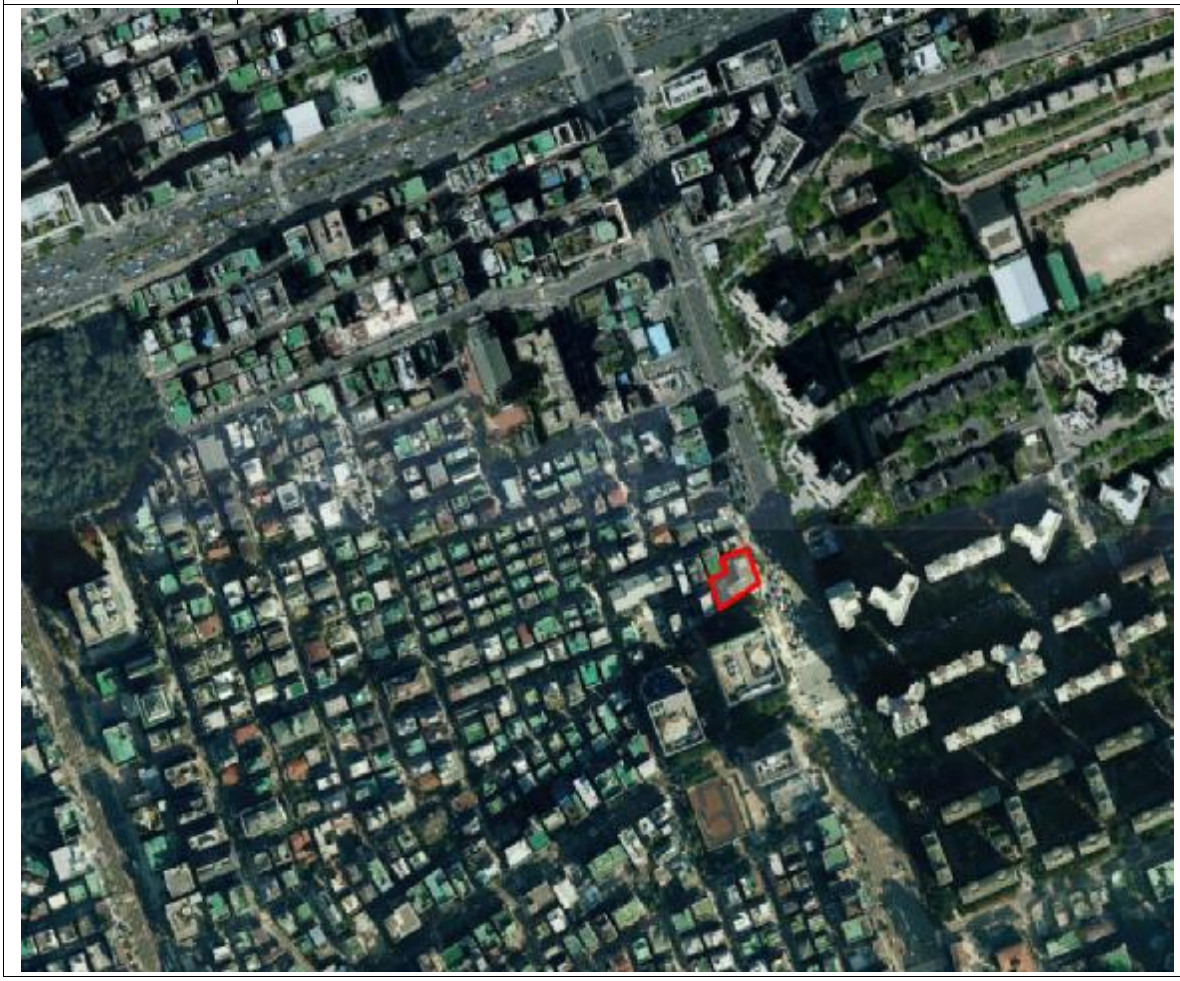
일련번호	층	호수	전유면적 (㎡)	공용면적 (㎡)	전유+공용면적 (㎡)	전용률	토지지분면적 (㎡)
가	지하**1**층	**101**	**224.99**	**12.69**	**237.68**	**94.7%**	**333.62**
나	지하**1**층	**102**	**209.98**	**-**	**209.98**	**100.0%**	
다	**3**층	**302**	**198.38**	**6.35**	**204.73**	**96.9%**	

※집합건축물관리대장, 관련공부 및 실지조사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입지 및 토지요항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개나리아파트교차로”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업무시설 및 근린상가, 소규모점포 등이 소재하는 노선상가지대입니다.
형상 및 지세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접지 및 인접 도로와 등고 평탄합니다.
교통상황 및 도로상태	※교통상황: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역삼역 (지하철 2호선)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이용 여건은 양호합니다. ※도로상태:북동측 및 남동측으로 폭 약 40m, 8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공법상 제한상태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건축선, 과밀억제권역, 건축선지정(도로경계선에서3미터후퇴)입니다.



3. 건물요항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마감재	**외벽**	시멘트몰탈 위 수성페인트 등
	내벽	수성페인트 및 일부 타일붙임 등
	창호	알류미늄샷시창호 등
이용상황		일련번호(가)~(다):각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 · 배수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및 기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임대관계 및 기타		미상입니다.



Ⅲ. 감정평가액 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1. 거래사례

[단가: 일원 미만 절사]

기호	소재지	전유면적(㎡) 대지권(㎡)	거래일자 사용승인일자	거래금액 (원)	단가 (원/㎡)
ㄱ	역삼동 653-3 내제지하층 제3호	134.98 51.43	2020-09-23 1978-07-20	2,644,590,000	19,592,458
ㄴ	역삼동 738-28 마이다스빌딩 제4층 제401호	115.9 37.63	2021-01-28 2004-01-07	947,000,000	8,170,836
ㄷ	역삼동 756-13 내제4층 제2호	58.02 20.55	2021-07-15 1975-09-17	700,000,000	12,064,805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KAIS

2. 감정평가사례

[단가: 일원 미만 절사]

기호	소재지	전유면적 (㎡)	기준시점	평가금액(원) 단가(원/㎡)	평가목적
a	역삼동 721-36 제3층 제301호	209.44	2021-04-08	1,890,000,000 9,024,064	담보
b	역삼동 653-3 내3층 제1호	104	2021-03-03	2,410,000,000 23,173,076	담보
c	역삼동 653-3 내제지하층 제3호	134.98	2021-03-03	2,530,000,000 18,743,517	담보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본건 및 유사물건의 가격수준

주위환경	용도	층	위치	전유면적 기준 가격수준(원/㎡)	비고
노선상가지대	근린생활시설	지층	-	약 **10,000,000 ~ 13,000,000**	본건 유사
	근린생활시설	**3**층이상	-	약 **12,000,000 ~ 15,000,000**	

4. 경매통계

지역	기간	용도	낙찰가율 (%)	평균낙찰가율 (%)	낙찰건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1**년간평균	근린상가	**77.36**	**71.63**	**12**

※출처**:** 태인경매정보

Ⅳ. 거래사례비교법의 적용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합니다. 비준가액이란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말합니다.

비준가액	=	거래사례가격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가치형성요인 비교

1. 거래사례 선정

1.1. 거래사례 선정 기준

① 거래사정이 정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
② 기준시점으로 시점수정이 가능한 사례
③ 대상물건과 위치적 유사성이나 물적 유사성이 있어 지역요인 · 개별요인 등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사례

1.2. 거래사례 선정

거래사례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사례 중에서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에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사례ㄷ”을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기호	소재지	전유면적(㎡) 대지권(㎡)	거래일자 사용승인일자	거래금액 (원)	거래단가 (원/㎡)
ㄷ	역삼동 **756-13** 내제**4**층 제**2**호	**58.02** **20.55**	**2021-07-15** **1975-09-17**	**700,000,000**	**12,064,805**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거래사례에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반영되어 있거나 거래 당사자가 시장에 정통하지 않은 등 수집된 거래사례의 가격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적절한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정 의견	사정보정치
거래사례의 거래가격은 인근지역 가격수준을 참작할 때 정상적인 거래사례라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1.000**

3. 시점수정

“시점수정”이란 거래사례의 거래시점과 대상물건의 기준시점이 불일치하여 가격수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거래사례의 가격을 기준시점의 가격수준으로 적정화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점수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 발표하는 상업용 부동산 자본수익률을 활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조사 · 발표되지 아니한 분기의 자본수익률 추정은 조사·발표된 자본수익률 중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분기의 자본수익률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일련번호(가~다) / 거래사례(ㄷ)

지역	서울 강남(평균)	용도	집합상가	시점수정치	1.00543
집합상가 지역 : 서울 강남 **(21.07.15~21.08.27)** **2021**년 **02**분기 : **1.11** **(1+0.0111*44/90)** ≒ **1.00543**					

※기준시점 현재 **2021**년 **3**분기 이후 지수는 미발표로 **2021**년 **2**분기 지수를 연장 적용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가치형성요인 비교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을 말합니다. “가치형성요인 비교”란 거래사례와 대상물건 간의 종별 · 유형별 특성에 따라 가치형성요인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이를 각각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개별화 · 구체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4.1. 지역요인 비교

대상물건과 거래사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합니다.(1.000)

4.2. 개별요인 비교

구 분	
요인구분	**세부항목**
단지외부요인	고객 유동성과의 적합성,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대중교통의 편의성(지하철, 버스정류장), 배후지의 크기, 상가의 성숙도, 차량이용의 편의성(가로의 폭, 구조 등) 등
단지내부요인	단지내 주차의 편리성, 건물전체의 공실률, 건물 관리상태 및 각종 설비의 유무, 건물전체의 임대료 수준 및 임대비율,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건물의 규모 및 최고층수 등
호별요인	층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주출입구와의 거리,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와의 거리, 향별 효용,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등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련번호	사례기호	단지외부요인	단지내부요인	호별요인	기타요인	누계치	비고
가, 나	ㄷ	**0.98**	**1.00**	**1.05**	**1.00**	**1.029**	본건은 사례와 비교시 단지외부요인(고객 유동성과의 적합성 등)에서 열세, 호별요인(층별효용에서 열세하나, 대지권의 크기 등에서 우세)우세 합니다.
다	ㄷ	**0.98**	**1.00**	**1.15**	**1.00**	**1.127**	본건은 사례와 비교시 단지외부요인(고객 유동성과의 적합성 등)에서 열세, 호별요인(층별효용 및 대지권의 크기 등에서 우세)우세 합니다.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반올림

5.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5.1. 적용단가

일련번호	구분		거래사례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적용단가 (원/㎡)
	층	호수					
가	지하1층	101	12,064,805	1.00	1.00543	1.029	12,482,096
나	지하1층	102	12,064,805	1.00	1.00543	1.029	12,482,096
다	3층	302	12,064,805	1.00	1.00543	1.127	13,670,867

(적용단가: 일원 미만 절사)

5.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정

일련번호	구 분		적용단가 (원/㎡)	전유면적 (㎡)	비준가액 (원)
	층	호수			
가	지하1층	101	12,482,096	224.99	2,800,000,000
나	지하1층	102	12,482,096	209.98	2,620,000,000
다	3층	302	13,670,867	198.38	2,710,000,000
합계					8,130,000,000

(비준가액: 백만원 미만 절사)

Ⅴ. 감정평가액 결정 및 결정 의견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인근지역의 가격수준 및 경매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련번호	감정평가액(원)	토지·건물 배분가액		토지가격 배분비율
		토지가격	건물가격	
가	**2,800,000,000**	**2,660,000,000**	**140,000,000**	**95%**
나	**2,620,000,000**	**2,489,000,000**	**131,000,000**	**95%**
다	**2,710,000,000**	**2,574,500,000**	**135,500,000**	**95%**
합계		**8,130,000,000**		

구 분 건 물 감 정 평 가 명 세 표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용 도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도로명주소]	730-5	점포 및 사무실 1동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3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405			1층	427.37			
				2층	427.37			
				3층	427.37			
				옥탑	50.81			
				지하층	434.98			
1	동소	730-5	대	제3종 일반주거지역	904.4			
가				(내) 철근콘크리트조 내제지하층 제101호	224.99	224.99	2,800,000,000	비준가액
			전체 토지 중	제지하층 제101호	에 대한 적정	소유권대지권		
나				(내) 철근콘크리트조 내제지하층 제102호	209.98	209.98	2,620,000,000	비준가액
			전체 토지 중	제지하층 제102호	에 대한 적정	소유권대지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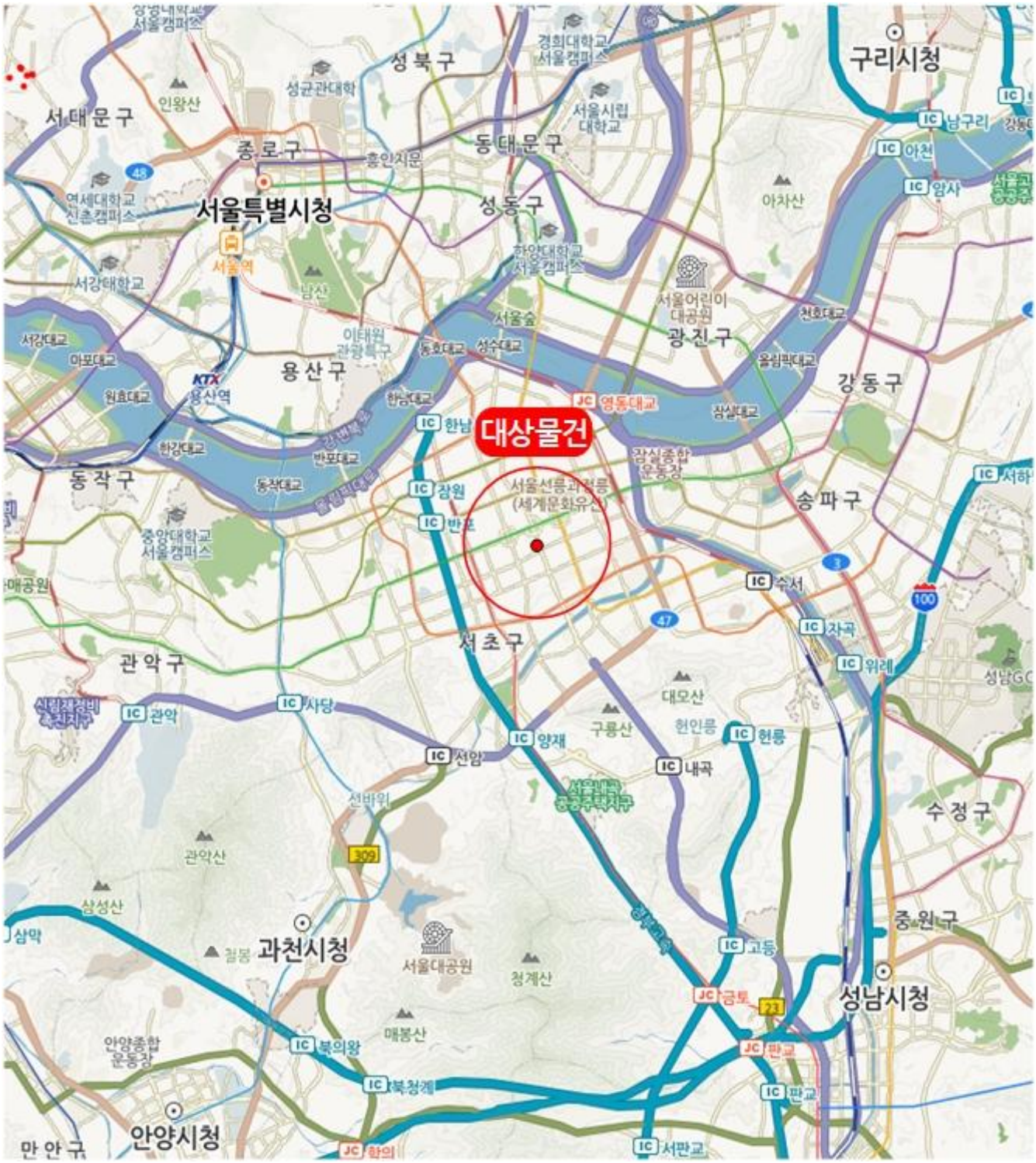
구 분 건 물 감 정 평 가 명 세 표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용 도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다				(내) 철근콘크리트조 내3층 제302호	198.38	198.38	2,710,000,000	비준가액
			전체 토지 중	제3층 제302호	에 대한 적정	소유권대지권		
	합 계						\ 8,130,000,000.-	
				이 하 여 백				

광 역 위 치 도

N
S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0-5** 제지하층 제**101**호 외 **2**개호



지 역 위 치 도

N
S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0-5** 제지하층 제**101**호 외 **2**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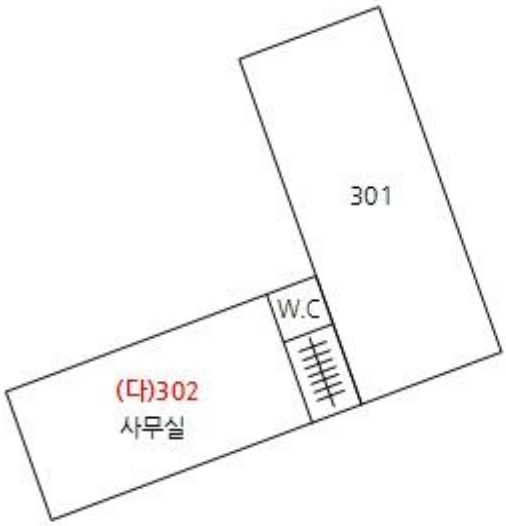


거래사례				평가사례				
기호	소재지	거래시점	단가(원/㎡)	기호	소재지	기준시점	평가목적	단가(원/㎡)
ㄱ	제지하층 제3호	**2020-09**	**19,592,458**	**a**	제3층 제**301**호	**2021-04**	담보	**9,024,064**
ㄴ	제4층 제**401**호	**2021-01**	**8,170,836**	**b**	제1호	**2021-03**	담보	**23,173,076**
ㄷ	제4층 제2호	**2021-07**	**12,064,805**	**c**	제지하층 제3호	**2021-03**	담보	**18,743,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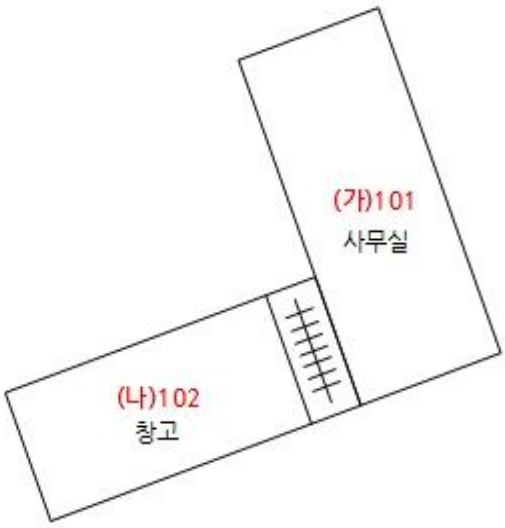
건물이용상태 및 임대내역

N
S
NON SCALE

[제3층 호별배치도 및 제302호 내부구조도]



[제지1층 호별배치도 및 제101호 제102호 내부구조도]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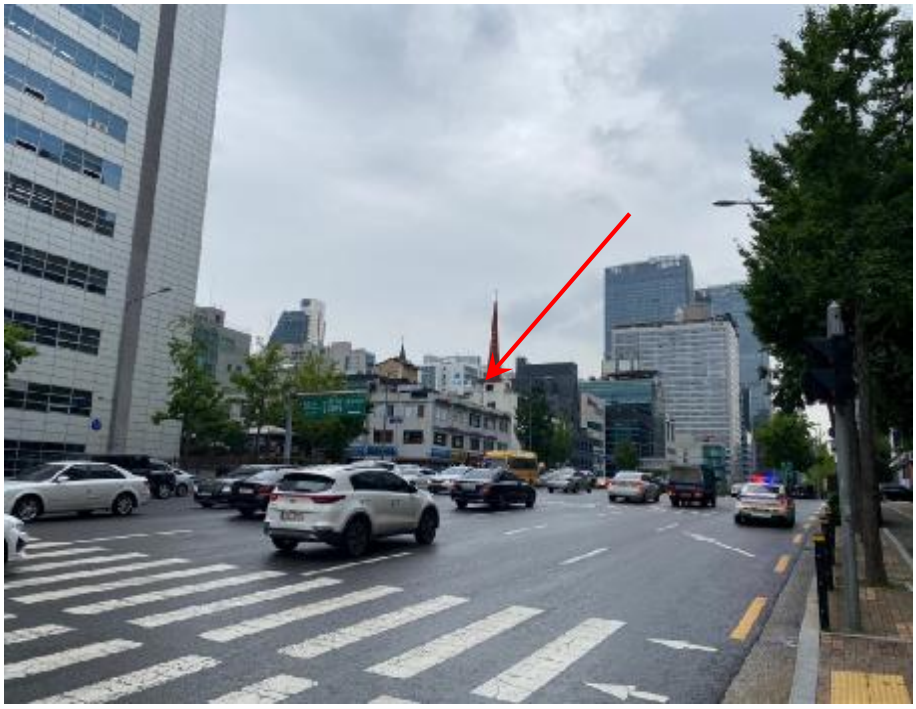


[본 건 전 경]



[본 건 전 경]

사 진



[주위전경(본건 남동측에서의 촬영)]



[본건전경(일련번호(가))]

사 진



[내부전경(일련번호(가))]



[본건전경(일련번호(나))]

사 진



[내부전경(일련번호(가))]



[본건전경(일련번호(다))]

사 진



[내부전경(일련번호(다))]